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추천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법적안정성 등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 추천위원회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 아래와 같이 개정(안 제9조제1항)

- 시장 추천 3명, 시의회 추천 3명 → 시장 추천 2명, 시의회 추천 3명, 이사회 추천 2명

나. 띄어쓰기 및 자구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
의견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6. 4. 2. ~ 4. 2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조윤경 (☎ 2133-251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 예술진흥”을 “문화예술 진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공연예술진흥”을 “공연예술 진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문화예술진흥”을 “문화예술 진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후단 중 “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사장이”를 “상임이사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상임이사 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사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3명”을 “사람 2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

항 중 “서울시의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임면하고자”를 “임명하고자”로 한다.
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3.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제17조제3항 중 “법인에 대하여”를 “법인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문화 예술 진흥</u> 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문화예술 진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법인의 사업) 법인은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(생략) 2. 삭제 3. <u>공연예술진흥</u>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. ~ 6. (생략) 7. <u>문화예술진흥</u> 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	제4조(법인의 사업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연예술 진흥</u>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문화예술 진흥</u> ----- ----- -----
제6조(정관) ① (생략)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<u>서울특별시 의회</u>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6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. ----- <u>서울특별시 의회</u> (이하 “ <u>시의회</u> ”라 한다) -- -----.
제6조의2(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	제6조의2(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

례) ① (생략)

②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7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추천위원회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사장이 추천하는 3명
 2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3명
- <신설>

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, 법인의 임직원,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·④ (생략)

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

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상임이사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가 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-----
----- 사장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추천위원회) ① -----

--.

1. ----- 사람 2명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3.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② -----

----- 시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임

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
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17조(경영평가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
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
할 수 있으며, 인사상·예산상
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
있다.

④ (생략)

명하고자 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경영평가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법인에게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띄어쓰기 및 자구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,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개정임

4. 작성자

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조운경 02-2133-2519